

cash back 관련

Q 당사(A)는 미국 본사가 100% 소유한 외투법인이고, 당사는 대만에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B)가 있습니다. 본사는 하기와 같은 계약을 일본의 원재료 매입 업체(C)와 cash back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대만에 있는 당사의 자회사(B)는 일본에 원재료 C와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업체(D)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 D는 C업체에서 원재료를 사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자회사(B)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1. 본사는 당사와 자회사의 C와의 원재료 매입 금액중 일정 금액을 cash back을 해주는 계약을 체결
2. B업체는 C와 직접적인 거래는 없으나, B업체가 D업체에서 구매한 금액중 D업체가 C에게 구매한 금액도 cash back 에 포함함.

질의사항)

1. 상기 거래로 발생한 cash back 금액을 C업체가 당사(A)에게 일괄로 지급하고 A업체는 B에게 해당되는 cash back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tax issue가 있을까요?
2. 상기와 같은 거래로 고려되어야 할 tax issue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A 구매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해외 거래처로부터 cash back을 받는 행위 자체로는 특별한 세무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계무역 질의

Q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로 당사의 해외법인에 신규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자 제조설비를 보내는 업무를 진행하려 하는데 해당설비는 해외(제3국)에서 당사 해외법인으로 직접 이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때 당사 부가세 신고시 해외(제3국) 선적일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하고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A 귀사의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해외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발주사의 loss 금액 차감 입금 관련 분개문의

Q 당사는 물류업에 종사하는 업체로서 발주사(화주)에게 화물주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흐름을 설명 드리자면, 발주사 → 당사 → 도급사 → 배송기사 순서로 서비스 도급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발주사가 사전 고지 없이 배송기사 패널티(작년 하반기 ~1월 발생)를 사유로 대금을 일부 차감한 후 지불하였습니다.(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당사는 도급사에게 해당 금액을 공제한 다음 입금할 예정입니다.

Q. 해당 내역을 매출인식시 어떻게 반영하여 분개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해당 내역 관련하여 도급사와 상호 합의가 된 상황이라 매출액을 그대로 두고 발주사의 외상매출금을 그대로 상계 하면서 loss금액만큼 도급사의 외상매입금을 차감하여 기장하였습니다. 해당 내역이 회계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맞는 분개 방식을 안내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A 발주사가 귀사에게 지급할 대금의 일부를 서비스의 불만족에 따라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순액반영하지는 않고, 일종의 배상이나 보상성격이므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승강기 교체에 따른 회계처리

Q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가 노후화되어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승강기 교체에 따른 회계 처리 및 감가상각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치비 5천만원. 기존 건물: 내용년수 40년중 잔존 내용년수 15년 승강기를 교체하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라 자산항목을 건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아니면 구축물 또는 집기비품 건물로 회계처리시 건물의 내용년수가 40년이 되나 기존 건물의 내용년수는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40년의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건물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15년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A 건물의 부속설비가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며, 건축물이 아닌 별도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